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18가합636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구수빈, 김성희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현, 박재현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가. D 주식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2018. 7. 2.에 한 9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8. 7. 2.에 한 2,000,000원의 변제행위, 2018. 7. 9.에 한 143,000,000원의 변제행위, 2018. 7. 11.에 한 6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8. 7. 11.에 한 2,000,000원의 변제행위, 2018. 7. 16.에 한 10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8. 7. 18.에 한 2,000,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3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D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18. 7. 16. 체결된 매매계약 중 별지 순번 1번 기재 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순번 1번 기재 기계를 반환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사출금형용 몰드베이스 제조판매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금형강을 공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며, E은 D의 사내이사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는 D로부터 별지 기재 각 기계를 매수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6. 7. 25.경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 금형강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5.부터 2018. 7. 9.까지 D에 금형강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D에 대하여 2018. 7. 2.자를 기준으로 합계 521,003,2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438,338,65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D의 피고 B에 대한 변제행위

D는 피고 B에게 2018. 7. 2. 90,000,000원, 같은 날 2,000,000원, 2018. 7. 9. 143,000,000원, 2018. 7. 11. 60,000,000원, 같은 날 2,000,000원, 2018. 7. 16. 100,000,000원, 2018. 7. 18. 2,000,000원 합계 399,000,000원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D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D는 2018. 7. 16.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D가 피고 주식회사에 별지 기재 각 기계를 매매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 및 기기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는 그 무렵 D로부터 별지 순번 1번 기재 기계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는 피고 B에게 2018. 7. 2.부터 2018. 7. 18.까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99,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위 송금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변제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2)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는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변제로서 송금 받은 3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가 시작된 2018. 7. 2.자를 기준으로 D에 대하여 합계 521,003,2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D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가 제1,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변제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D는 2018. 7. 2. 기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21,003,260원,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채무 310,000,000원,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무 415,200,000원 합계 1,246,203,2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D의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소극재산은 1,246,203,260원이다.
- ② D는 2018. 7. 2. 기준 유한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5,402,987원, I조합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 50,000,000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예금채권 106,893,261원 합계

242,296,24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10,400,000원 상당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구입일자로부터 1년 내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8. 7. 2. 기준으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가상각비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D의 적극재산은 752,696,248원이다.

순 번	기계명	모델명	구입일자	금액(부가세포함)(원)	구입처
1	NC보링기(J)	K	2016. 6. 8.	203,500,000	L
2	머시닝센터(M)	N	2016. 6. 8.	99,000,000	L
3	NC보링기(O)	P	2016. 6. 8.	49,500,000	L
4	머시닝센터(M)	Q	2016. 6. 8.	22,000,000	L
5	라디알1500	R	2016. 6. 8.	22,000,000	L
6	평면연삭기(S)		2016. 1. 28.	40,700,000	T
7	평면연삭기(U)		2016. 1. 28.	35,200,000	T
8	밀링기(V)		2017. 7. 18.	16,500,000	W
9	후로와 보링기	X	2017. 8. 8.	22,000,000	T
합계				510,400,000	

③ 피고 B은 D가 당시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48,555, 921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F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 임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결국 2018. 7. 5. 원고에 대한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점, F는 이후 원고에 대한 어음채무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F에게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D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하는 적극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 B은 D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197,752,170원 상당의 철판자재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철판자재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F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인데 D가 위 철판자재를 취득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철판자재를 D의 적극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B의 주장대로 위 197,752, 170원 상당의 자산을 공동담보로서 기능하는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D의 소극재산은 1,246,203,260원인 반면,

D의 적극재산은 950,448,418원(= 앞서 인정한 적극재산 752,696,248원 + 위 철판자재의 가액 197,752,170원)에 불과하여 D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D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악의 추정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E, Y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① 당시 D의 자금상황에 비추어 볼 때 399,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상당히 큰 액수의 변제에 해당한다.

② D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F가 원고에게 발행한 전자어음 6매에 관하여 배서를 한 상태였고, F는 당시 임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가 2018. 7. 5. 위 전자어음 중 1매가 부도처리 되기에 이르렀는데, 부도가 있기 3일 전인 2018. 7. 2.부터 2018. 7. 18.까지 17일간 피고 B에게 합계 399,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E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고 있었고, E은 D의 사내이사와 F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으로서의 D의 변제능력뿐만 아니라 F의 자금난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F가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이 곧 예금부족을 원인으로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변제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D와 F의 재정상태, 피고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D가 2018. 7. 2.부터 2018. 7. 18.까지 피고 B에게 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의 D가 유일한 재산인 기계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별지 순번 1번 기재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기계의 반환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참조).

2) 판단

D가 2018. 7. 2.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D는 위 기준일 이후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2의 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D는 2018. 7. 2. 기준 합계 510,400,000원 상당의 기계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계가 위 2018. 7. 2.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동일한지 아니면 일부 매각된 기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별지 기재 각 기계가 D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 주식회사에 별지 기재 각 기계를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였다거나 피고 주식회사와 통모하여 D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 D의 사내이사 겸 F의 대표이사인 E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의 재정 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75,000, 000원은 별지 기재 각 기계에 대한 구입일로부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7. 16.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금액이 275,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0,000,500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김성대, 판사 박건희

별지

기계의 표시

품명	제조사/규격		수량
NC보링기		DBC-130	1대
머시닝센터		SIRIUS-1250	1대

